



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

1. DDA 농업협상의 진행경과

▣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DDA 협상 출범

※ 당초 협상일정 : ① 세부원칙(Modality) 수립('03.3까지) ② 이행계획서 제출 ('03. 9, Cancun 각료회의까지), ③ 협상완료('04말)

◇ 2003.3월 농업협상 그룹 의장(Harbinson)은 당초 시한내 협상 세부원칙(Modality) 합의를 위해 비교적 완벽한 형태의 초안을 마련하고 타결을 시도했으나 실패

○ 2003.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중간단계로 기본골격만이라도 합의하는 안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

▣ WTO는 금년 3월부터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(framework)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 진행

○ 이 과정에서 WTO 일반이사회 오시마의장은 7월 중순까지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골격 초안(오시마 안)을 제시(7.16)

○ 동 초안을 기초로 회원국과 주요 협상 그룹간의 마무리 논의를 거쳐 7.31일 일반이사회에서 확정됨

※ 당초의 협상시한인 2004말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하도록 하고, 제6차 WTO 각료회의를 2005.12월 홍콩에서 개최키로 함

2. 기본골격 타결안 주요내용(7.31)

〈타결안 개요〉

- ◇ “농업보호 수준의 실질적 감축”을 위해 관세와 국내보조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방식을 채택
- ◇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하고, 개도국 우대를 강화하여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축성 부여
- ◇ 회원국간 입장이 상반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계속될 후속협상 과제로 넘기고 이번안에서는 기본골격만 합의

가. 시장접근분야

- ▣ 관세 수준에 따라 대상품목을 여러 구간으로 분류하여 감축하되, 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
 - 관세구간의 수, 관세감축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상
 - 우리나라가 반대의를 표시해온 관세상한 문제는 추후 평가하기로 함
- ▣ 스스로 선택한 민감품목을 인정하고, 신축적 고려를 받아 들였으나, 관세감축과 TRQ 증량을 연계하여 의무부과
 -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율, 이행기간 등의 우대를 규정하고, 특별품목(Special Product)에는 보다 많은 신축성 부여

나. 국내보조분야

- 감축대상보조(AMS), 최소허용보조(De-minimis), 생산제한 제도하의 직접지불(Blue box)을 “무역외 곡보조”로 규정하고 이를 모두 합한 총액을 감축해 나감(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)
 - 이행초년도와 후속 이행기간동안 무역외곡보조 총액은 80% 수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규정
- 생산제한시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블루박스를 도입하고, 블루박스 보조금 지급한도를 농업총생산액의 5%로 규정
- 최소허용보조(De minimis) 감축에 개도국 특별대우를 고려

다. 수출경쟁분야

- 우리나라 등이 이용하고 있는 개도국 수출 물류비 지원은 현행대로 인정

3. 평가 및 향후 대응

- 이번합의로 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(Framework)이 마련됨으로써 협상진전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
 - 그러나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세부쟁점들이 후속 협상 과제로 남아있어 현단계에서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음
- 그동안 협상과정에서의 우리 노력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긍정적인 면과 미흡한 면을 동시에 포함
 - 관세수준이 높은 품목은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반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인

〈우리나라 주요 고관세 품목 현황〉

구 분	실품목(누계)	목 표	비 교
300%이상	25개	94개(6.5%)	쌀, 마늘(360%), 참깨(630%), 쌀보리(300%), 겉보리(324%)
250%이상	31개	108개(7.4%)	고추(270%)
200%이상	39개	124개(8.5%)	수삼(223%), 밤(219%)
100%이상	47개	142개(9.8%)	분유(176%), 감귤(144%)

- ※ 쌀은 관세화 유예 품목이나 관세 300% 이상으로 분류
 - 국내보조분야에 대해서는 종래의 감축대상보조(AMS)외에 최소허용보조(De minimis)가 감축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담요인이나 감축 과정에서 일정수준의 신축성이 인정됨
 - 신규로 블루박스 보조금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도 긍정적
 - * 대상품목은 후속협상의 내용을 감안하면서 추후 검토 대응
- 향후 후속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쟁점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을 최소화이며, 특히
 -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던 관세상한 설정 저지
 - 민감품목의 신축성을 제약하는 TRQ 증량 최소화
 -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(SP)의 범위와 신축성 확대
 - De minimis의 상한확대에 중점을 두고 대응 예정
- 농업인, 농민단체, 언론계, 학계 등에 기본골격 타결안 및 향후 대응계획 집중 홍보 추진
 - DDA 농업협상 관련 세미나 개최, 농민단체 설명회, 시·도 순회 지방설명회 개최 추진
 - 이미 수립된 농업·농촌종합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향후 협상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하는 작업 지속



- 이번에 합의된 기본골격(Framework)을 토대로 향후 전개될 세부원칙(Modality) 협상을 위해 품목·정책별 정밀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
- 〈참고〉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요지

가. 시장접근

- 관세구간 설정 및 관세감축의 원칙
 -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감축하는 구간방식(Tiered formula)을 채택
 - 감축기준세율 : 양허관세
 - 고관세 품목은 더 많이 감축(deeper cuts in higher tariffs)하되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인정
 - * 관세구간의 수와 경계 및 구간내 감축방식은 추후 협상
 - 관세상한 설정 문제는 추후 평가과제로 남김
- 민감품목(Sensitive Products)에 신축성 부여
 - 적절한 수(an appropriate number)의 대상품목을 각국이 선정하여 제시
 - 민감품목은 실품목(each product)별로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조화를 통해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
 - TRQ 확대는 관세감축 공식에서 편차(deviations)를 고려하여 추후 협의될 기준과 규칙에 따라 결정
- In-quota관세 감축 및 TRQ 개선
 - 현행 TRQ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, In-quota관세는 감축 또는 철폐
 - 경사관세, 관세단일화(Tariff simplification), SSG는 추후협상
- 개도국우대(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)
 - 관세감축방식, 낮은 관세감축률 적용, 민감품목의 수 및 취급, TRQ증량, 이행기간에서 선진국보다 우대 명문화
 - 개도국에 있어 특별품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신축성 부여
 -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(Special Products)을 지정하여 제시
 - 선정기준 및 대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구체화
 - 개도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제도(SSM) 설정

나. 국내보조

- 기본원칙
 - 보조수준에 따라 다른 감축공식을 적용하되(Tiered Formula)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는 더 많은 감축의무를 이행
 - 감축대상보조(AMS) 감축과 함께 AMS와 최소허용보조(de-minimis), 블루박스보조를 합산한 무역왜곡보조의 총액에 대한 감축의무 부과
 - 개도국 우대에 대하여는 긴 이행기간, 낮은 감축률을 적용하고, 개도국 우대 국내보조(농업협정 제6.2조)는 유지 등
-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
 - 구간공식(tiered formula)에 따라 AMS, de-minimis, 블루박스의 총액을 감축하되,
 - 이행 초년도와 후속 이행기간동안 무역왜곡보조 총액은 80%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
- 감축보조(AMS)
 - 구간별 감축공식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보조를 가진 국가는 더 많이 감축
 - 품목별 상한 설정 및 일부 품목의 경우 상한수준 감축
- 최소허용보조(de-minimis)
 - 최소허용보조 감축은 개도국 우대원칙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

○ 다만, 거의 대부분의 de-minimis를 빈농·생계농을 위한 지지에 제공하는 개도국은 감축면제

■ 블루박스 보조

○ 농정개혁의 수단으로서 블루박스의 역할 인정

○ 블루박스 보조의 도입 조건을 규정

〈생산제한을 전제로 한 직접지불〉

- 고정된 면적과 단수에 기초할 것, 또는

- 고정된(fixed and unchanging) 기준년도 총 생산액의 85%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일 것, 또는

-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한 직접지불일 것

〈생산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직접지불〉

- 고정된 면적과 단수에 기초할 것, 또는

-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한 직접지불일 것, 그리고

- 고정된 기준년도 총 생산액의 85% 이하에 대한 지불일 것

○ 블루박스 보조의 지급한도는 과거년도 농업총생산액의 5%로 규정

○ 블루박스 보조 지급실적이 있는 국가뿐 아니라 잠재적인 사용국에도 상한 적용을 명시

■ 허용보조

○ 생산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도록 요건을 재검토 및 명확화하고 NTC의 적절한 반영

○ 이행 점검 및 감독 체제 보완

다. 수출경쟁

■ 기본원칙

○ 합의된 시점까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 및 여타 수출지원 정책의 규율 강화

■ 철폐대상 수출보조

○ 양허된 수출보조와 180일 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진 수출신용, 최소이자율, 위험프리미엄 등에 대한 규율에 어긋나는 수출신용

* 180일 이내의 수출신용 등을 규율하기 위한 조건을 추후 합의

○ 정부의 재정지원과 손실보전 등 수출국영무역의 무역왜곡적 관행

○ 잉여농산물 처분 등 향후 마련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원조

■ 개도국우대

○ 긴 이행기간 부여

○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유지(농업협정 제9.4조)

- 모든 종류의 수출보조 철폐이후 협상되는 적정한 기간동안 존치

○ 국내소비자 가격안정과 식량안보 확보에 관련되는 개도국(STEs)의 국영무역기관의 독점적 지위유지를 위한 특별한 배려

■ 예외적인 상황 고려

○ 일정한 요건과 협의절차에 따라 회원국간 일시적인 금융지원 약정 가능

라. 기타

■ 신규 가입국

○ 신규 가입국의 특별한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신축성을 보장하는 조항 신설 추가

■ 감시와 감독

○ 농업협정 제18조는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 필요

■ 미결쟁점

○ 분야별 자유화(Sectorial initiatives), 수출세, 지리적표시 등

○ 수출금지 및 제한(농업협정 12.1조) 규율 강화 조항 추가